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99
------	------

제출일자 : 2025. 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서류 송달 중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5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2. 19. ~ 2025. 3. 11.) 결과: 별도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첨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u>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 <u>45만원</u>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 시행에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재원 조달 사항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박진이
연 락 처	2627 - 1271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7. 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

시 금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은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7]

#### 제5조의3(대리인의 선정 신청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영 제6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7]

#### 제5조의4(대리인의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대리인 중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7]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금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7.17>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신설 2020.7.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